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07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의자 : 김선교 · 김소희 · 김예지
김미애 · 박충권 · 구자근
김상훈 · 서천호 · 윤상현
김성원 · 박수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가능 기간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이행 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가의 모성보호 노력 의무를 규정한 헌법의 가치와 출산장려와 모성보호를 강조하는 정부정책기조와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권익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 지연으로 여성 응시생의 권리 제한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권리구제를 위한 조속한 법개정 필요성을 권고(2025년 12월)한 바 있음.

이에 여성이 출산한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임신 중 유산·사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2항).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2. 출산한 경우: 출산 1회(다태아 포함)에 대하여 1년
3. 임신 중 유산·사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출산한 경우 및 임신 중 유산·사산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의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5년의 응시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생 략)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u>「병역법」</u> 또는 <u>「군인사법」</u>에 따른 병역의무를 <u>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u></p> <p><u><신 설></u></p>	<p>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u></p> <p>1. <u>「병역법」 또는 「군인사법」</u>에 따른 병역의무를 <u>이행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u></p> <p>2. <u>출산한 경우: 출산 1회(다태아 포함)에 대하여 1년</u></p> <p>3. <u>임신 중 유산 · 사산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u></p>
<p><u><신 설></u></p>	
<p><u><신 설></u></p>	

는 기간